

❖ 정부시책 ❖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앞으로 중전기기 제품중 개발시험에 합격하고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ISO)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계기용변성기(MOF) 및 복합형 계전기가 면제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품자마크 표시제품에 대해 인증시험을 면제해 주던 것을 동마크가 오는 6월 27일자로 유효기간이 종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인증시험 면제대상품목을 한국산업규격(KS)이나 품질보증체제인증(ISO)을 획득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변성기류의 개발시험대상제품은 기존의 전압변성기(PT), 전류변성기(CT), 접지전압변성기(GPT), 영상변류기(ZCT) 등 4

개품목에서 계기용변성기(MOF)가 추가돼 총 5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이에따라 MOF의 개발시험방법은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 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하는 규격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하게 된다. 이때 60A 이하 규격중에서 과전류 강도 1백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이와함께 계전기류의 시험대상품목은 기존의 과전류계전기(OCR), 선택접지계전기(SGR), 비율차등계전기(RDR)등 9개품목에 복합형계전기가 추가돼 총 10개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인증시험 면제혜택을 받는 업체는 총 35개사에 달한다. 이번 개정 고시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54호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 4. 14

통상산업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제 1조(목적) 이 요령은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전기기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시험”이라 함은 인증시험과 개발시험을 총칭한다.

1. “인증시험”이라 함은 양산되는 제품의 성능, 특성등이 주문자의 사양 혹은 설계내용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개발시험”이라 함은 처음 개발된 제품이거나, 형질이 변경된 제품의 모델, 특성등이 국내 혹은 해외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 3조(시험의 대상) 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중 <별표 1>과 같다.

제 4조(시험의 신청) 중전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이하 “공인인증시험”이라 한다)과 개발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 5조(시험방법 및 적용규격 등) ① 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내에는 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 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기타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규격

제 6 조(공인인증시험의 일부 면제) ① 생산자는 다음 각 호 1의 중전기기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2. 개발시험 합격제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 1의 제품

가.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인증 범위 제품

나. 가목의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인증범위 제품과 동일한 품목으로 〈별표 1〉에서 분류하는 제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 제품별 〈별표 3〉의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공인인증시험의 면제신청) ① 생산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이하 “전기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 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진흥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처리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생산자 인증시험) ① 생산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시험으로 본다.

② 제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준용한다.

제 9 조(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등) ①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 10 조(품질관리위원회 운영) ①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제 11 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인인증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3. 공인시험기관 및 해외규격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요령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 12 조(사후관리) ① 전기진흥회장은 공인인증시험의 면제제품 중 다음 각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면제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전기사고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2.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는 제품 다만, 이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 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당해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인증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인증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당해제품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보고) 전기진흥회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요령에 의한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 ② (관련고시의 폐지) 상공부 고시 제92-6호는 이 요령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상공부 고시 제92-16호의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이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전기기 시험대상 품목 및 제품 분류표

품 목 명	제 품 명
1. 변압기	① 3.3KV 이상의 유입식 변압기 ② 3.3KV 이상의 몰드식 변압기
2.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 Gas Insulated Switchgear) ② 가스차단기(GCB : Gas Circuit Breaker) ③ 오일차단기(OCB : Oil Circuit Breaker) ④ 진공차단기(VCB : Vacuum Circuit Breaker)
3. 개폐기	① 자동구간 개폐기(Ass : Automatic Section Switch) ② 리클로우저(Recloser) ③ 섹숀어라이저(Sectionalizer) ④ 자동부하 절체스위치(ALTS :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⑤ 인터럽터 스위치(Interrupter Switch) ⑥ 부하개폐 스위치(LBS : Load Breaker Switch) ⑦ SF ₆ 가스개폐기 ⑧ 라인스위치(LS : Line Switch) ⑨ 단로기(DS : Disconnecting Switch) ⑩ 오일스위치(OS : Oil Switch)
4. 휴 즈	① 파워 휴즈(PF : Power Fuse) ② 컷아웃 스위치(COS : Cut Out Switch) ③ 휴즈부착 단로기(FDS : Fused Disconnecting Switch)
5.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PT : Potential Transformer) ② 전류변성기(CT : Current Transformer) ③ 접지전압변성기(GPT : Ground Potential Transformer) ④ 영상변류기(ZCT : Zero Phase Current Transformer) ⑤ 계기용변성기(MOF : Metering Out Fit)
6. 보호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OCR : Over Current Relay) ② 과전류접지계전기(OCGR : Over Current Ground Relay) ③ 선택접지계전기(SGR : Selective Ground Relay) ④ 방향성접지계전기(DGR : Directional Ground Relay) ⑤ 접지계전기(GR : Ground Relay) ⑥ 과전압접지계전기(OVGR : Over Voltage Ground Relay) ⑦ 과전압계전기(OVR : Over Voltage Relay) ⑧ 부족전압계전기(UVR : Under Voltage Relay) ⑨ 비율차동계전기(RDR : Ratio Difference Relay) ⑩ 복합형계전기
7. 피뢰기	① 캡(Gap)형 피뢰기 ② 캡레스(Gapless)형 피뢰기
8. 케이블 종 단 접속재	① 23kV급 60mm ² ② 23kV급 200mm ² ③ 23kV급 325mm ²

품목별 인증시험 및 개발시험 방법

1. 인증시험은 전규격의 생산제품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케이블 종단접속재의 경우에는 200개당 2개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2. 개발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개 발 시 험 대 상 제 품 명	시 험 방 법
가. 변압기 ① 154kV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 ② 3.3kV 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 ③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 ④ 3.3kV 이상 66kV 이하의 몰드식 변압기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나. 차단기 ① 가스절연개폐장치 ② 가스차단기 ③ 오일차단기 ④ 진공차단기	전압, 차단용량,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다. 개폐기 ① 자동구간 개폐기 ② 리클로우져 ③ 색손어라이저 ④ 자동부하 절체스위치 ⑤ 인터럽터 스위치 ⑥ 부하개폐 스위치 ⑦ SF ₆ 가스개폐기 ⑧ 라인스위치 ⑨ 단로기 ⑩ 오일 스위치	전압, 전류, 소호 및 구동장치에 따라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라. 휴즈 ① 파워휴즈 ② 컷아웃 스위치 ③ 휴즈부착 단로기	전압 및 차단전류에 따라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개발시험 대상제품명	시험방법
마. 변성기 ① 전압변성기 ② 전류변성기 ③ 접지전압변성기 ④ 영상변류기 ⑤ 계기용변성기	절연방식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전압변성기, 전류변성기, 접지전압변성기는 22.9kV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하여 각 1대씩 한다. 2. 영상변류기는 전압에 관계없이 1 대를 한다. 3. 계기용변성기는 22.9kV급으로서 정격 1차 전류 60A초과 및 60A 이하로 구분하며 개발시험을 받고자 하는 규격중 가장 큰 전류의 형식 각 1대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 60A이하 규격중에서 과전류 강도 150배 이상으로 시험할 경우는 15A를 대표형식으로 한다.
바. 계전기 ① 과전류계전기 ② 과전류접지계전기 ③ 선택접지계전기 ④ 방향성접지계전기 ⑤ 접지계전기 ⑥ 과전압접지계전기 ⑦ 과전압계전기 ⑧ 부족전압계전기 ⑨ 비율자동계전기 ⑩ 복합형계전기	전압, 전류, 구조 및 동작시간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사. 피뢰기 ① 캡(Gap)형 피뢰기 ② 캡레스(Gapless)형 피뢰기	전압 및 방전전류에 따라 각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아. 케이블 종단접속재 ① 23kV급 60mm ² ② 23kV급 200mm ² ③ 23kV급 325mm ²	각 제품별로 1대씩 선정하여 시험한다.

품목별 인증시험 설비현황

품 목 별	시 험 설 비 명	비 고
가. 변압기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Ratio Tester ③ 저항정밀 Bridge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온도상승 시험설비 ⑨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 CT 및 Meter	유입식에 한함
나. 차단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 CT 및 Meter	GIS, GCB에 한함 OCB에 한함
다. 개폐기	① 동작특성 시험대(특성 및 동작시험) ② 접촉저항 측정설비 ③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④ SWC 시험설비 ⑤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⑥ Gas 누설 Detector ⑦ 온도상승 시험설비 ⑧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 CT 및 Meter	PCB 내장형에 한함 Gas Type에 한함
라. 휴 즈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PT, CT 및 Meter	
마. 변성기	① 비오차 시험대로서 표준 PT, CT 및 표준부담 ②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③ 내전압 시험설비 ④ 충격 전압 시험설비 ⑤ 온도상승 시험설비 ⑥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바. 보호계전기	① 보호계전기 시험대 ② 내전압 시험설비 ③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사. 피뢰기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③ 누설전류 측정설비 ④ 0.5급 이상의 계측장비로서 정밀 Meter	Gap Type에 한함 Gap Type에 한함 Gapless Type에 한함
아. 케이블 종 단 접속재	①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② 직류 내전압 시험설비 ③ 충격 내전압 시험설비	

세계 우수자본재 지정事業 추진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개발된 자본재중 품질·기술·가격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본재를 '세계 우수자본재'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개발된 자본재 품목중 품질·기술·가격면에서 선진국 경쟁 회사의 제품수준을 뛰어넘는 제품들을 세계 우수자본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관련된 지정절차·기준·지원내용 등을 담은 '세계우수자본재 지정 요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자본재 전략품목이나 우수품질마크(EM)를 획득한 자본재 품목중 세계수준에 도달한 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20개 품목을 세계우수자본재로 지정하고 이들 자본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세계 우수자본재가 해외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자본재종합정보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세계 우수자본재 지정사업의 관

전이 적정자본재 선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품목선정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관련 통산부는 국립기술품질원을 추진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기술품질원에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한편 국립기술품질원의 전문연구인력과 시설·평가설비를 활용하여 모든 대상품목별로 외국의 세계 우수자본재와 품질·기술·가격경쟁력을 비교 평가, 세계 우수자본재로 지정하고 평가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통산부는 지난 '95년 5월부터 자본재육성대책의 일환으로 717개 품목을 자본재 전략품목으로 지정,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 결과 수출 및 매출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내 개발된 자본재품목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품질마크(EM)를 획득한 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산부가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수출은 지난해 3억 7900만달러에서 올해에는 5억 8200만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벤처기업 技術 확보 지원 強化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선진국 기업들과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과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벤처기업에 수요조사부터 계약체결까지 일괄 지원하는 '벤처기술 이전 및 투자 중개 알선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신부는 이를 위해 韓日 및 韓美산업기술 협력재단 사업을 벤처산업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EU·캐나다 등과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부는 세계첨단기술이 벤처기업에 의해 선도되고 있으며 세계 우수기업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첨단기술의 도입 또는 투자유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벤처기술 중개·알선 대상국가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확대하고 대상업무도 기술의 중개·알선에서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개발까지 확대하여 국내 벤처기업이 손쉽게 첨단기술을 확보해 국제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술 이전 및 투자 중개알선 체제는 벤처기업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투자협력 타당성을 평가한 후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게 된다.

또 통산부는 EU·캐나다·호주 등도 민관공동의 산업기술 협력, 공동개발, 합작투자 사업추진에 관심을 표명해온에 따라 민관공동의 무역·투자협력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98년부터는 이들 국가과의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국내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선진국의 벤처기업 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생 벤처기업 창업경연대회, 한·일 양국의 벤처기업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 벤처기업 로드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통산부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정책 연구소(ITEP)의 주관아래 한·일 산업기술 중개·알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기술협력으로부터 벤처기업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일본기술의 중개·알선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접수된 27

개 과제중 기술이전 타당성이 인정된 고주파
유도가열장치제작기술 등 24개 과제를 대상

으로 기술 중개 · 알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老朽시설개체 稅額控除 확대

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투자금액의 5%에서 5月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경기하강 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회복과 합리화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이 경과된 노후 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당초 올해부터 내년말까지는 투자금액의 5%를 그 기업이 내야할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돼 있었으나 올 연말까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투자액의 1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 · 증설의 경우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오로지 시설개체만 대상이 된다.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과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던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작년말까지 국산설비의 경우는 투자액의 10%, 외산설비는 투자액의 3%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해 주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내외산 차별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해 시행기간을 다시 내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폭도 내외산 구별없이 모두 투자액의 5%로 일원화 됐었다.

이번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폭의 확대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주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 · 증설투자에 집중돼온 반면 노후시설 개체에는 등한시해 국내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크게 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노후시설 개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통상산업부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요청했던 신 · 증설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과 지나친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품질원, 中企 CE마크 획득 지원

유럽지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CE마크 획득이 수월해지게 됐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들의 CE 마크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사전시험평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품질원의 사전시험평가제도는 국내에서 전자파적합성(EMC) 등 유럽연합(EU)의 규격과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시험평가를 거친으로써 실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체들의 미흡한 기술이나 애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들이 CE마크를 획득하는데 1회 불합격한다고 가정할 때 사전 시험평가제를 이용하면 약 1,200만원의 경

비와 4~6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수입규제를 목적으로 전기 ·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인증의 핵심사항인 EMC 및 안전도 평가를 위한 정밀측정시설을 갖추지 못한데다 전문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기술품질원은 사전시험평가 외에 EMC에 맞춘 기술자문, 시험설비 개방 등의 지원도 함께 실시, 중소기업들이 EU지역에 수출할 때 겪는 기술애로를 해결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EMC전문기술지도팀 구성을 추진중이다.